

2020. 10.17.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개론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imcodi.kr

1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주)법은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 ② 1884년 프랑스의 자치경찰법전에 의하면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 ·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
- ③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어 경찰작용의 목적 축소에 기여하였다.
- ④ 띠톱판결은 행정(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해설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X)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한 것은 1795년 제정된 죄와형벌법전 제18조이다.

2 경찰의 분류와 구분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또는 경찰작용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수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분류된다.
- 다. 광의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 · 임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며 이러한 경찰개념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이다.
-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경찰의 조직 · 인사 · 비용부담)에 따른 분류이다.
- 마.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이다.
- 바.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해설 모두 옳은 설명이다.

3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서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확대되고 있다.
- 나.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이 있다.
- 다. 인간의 존엄·자유·명예·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협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적 권리와 법익이 보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원조는 잠정적인 보호에 국한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권리구제는 법원(法院)에 의하여야 한다.
- 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 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오늘날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 마.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조건이나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밤 시간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도 통행한 운전자는 경찰책임자가 된다. 이는 공공의 안녕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침해함으로써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바.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경찰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가 (X)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축소되고 있다.

나, 다, 라, 마, 바 모두 옳은 설명이다.

4 경찰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과급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다.
- ②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경찰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 ③ 경찰위원회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 경찰책임의 확보 등은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적 민주화 방안이다.
- ④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설 ▶ ① (X) 성과급제도의 확대는 경찰의 경영주의의 내용이다.

② (X) 「경찰법」 제4조에서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인권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③ (X) 경찰위원회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대외적, 경찰책임은 대내·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④ (O) 경찰의 기본이념 중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 · 고문 ·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 ·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라.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마.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바.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사.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3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 가 (O) 동강령 제5조 제1항 제2호

- 나 (X)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동강령 제5조 제1항 제3호)
다 (O) 동강령 제5조 제1항 제5호
라 (O) 동강령 제5조 제1항 제4호
마 (O) 동강령 제5조 제1항 제7호
바 (O) 동강령 제5조 제1항 제9호
사 (X)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동강령 제5조 제1항 제8호)

6 경찰의 부패이론과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조원인설'은 니더호퍼, 로벽, 바커, 월슨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신임경찰들이 선배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 ② '썩은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신임경찰 채용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필드버그가 주장한 이론으로 공짜 커피나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kr에서 제공됩니다.



김재규경찰학원

호의가 나중에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 ④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으로 적절한 도덕적 동기, 최후수단성, 성공 가능성, 중대성, 급박성 등이 있다.

- 해설** ① (X) 월슨이 주장한 이론은 전체사회 가설로 시민사회의 경찰부패에 대한 묵인 · 조장이 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이다.
 ② (X) '썩은사과 가설'은 부패문제를 개인적 결함 문제로 보았다.
 ③ (X)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서먼이다.
 ④ (O) 옳은 설명이다.

- 7 코헨(Cohen)과 필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 각 사례와 가장 관련 깊은 경찰활동의 기준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김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 – [공공의 신뢰]
 나. 1주일간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는 자신의 TV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에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의 B가 A의 TV를 몰래 훔쳐가 사용 중인 것을 창문너머로 확인하였다. 이때 A는 몽둥이를 들고 가서 직접 자기의 TV를 찾아오려다가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하여 TV를 되찾았다. – [공공의 신뢰]
 다. 박순경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 다니려고 하였다. – [공정한 접근]
 라. 이순경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 지었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마. 최순경은 경찰입직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에 임용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자, 과거의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바. 탈주범이 자기 판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한순경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공명심에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탈주범 검거에 실패하였다. – [협동]
 사. 은행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차량도주를 하고 있다면 경찰은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 [생명과 재산의 안전확보]

- ① 0개
 ③ 2개

- ② 1개
 ④ 3개

- 해설** 모두 옳은 연결이다.

8 갑오개혁이전 조선시대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의금부는 고려의 순군만호부를 개칭한 것으로 왕명을 받들고 국사법이나 왕족관련 범죄, 사형죄 등 중요한 특별범죄를 담당하였다.

나. 포도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독립된 경찰기관으로 도적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 사현부는 풍속경찰을 주관하고 민정을 살피어 정사(政事)에 반영하는 등 행정경찰 업무도 담당하였다.

라. 초기의 암행어사는 정보경찰 활동을 주로 수행했으며, 이후에는 지방관리에 대한 감찰이나 민생을 암암리에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등 주로 감독·감찰기관으로서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마. 형조(刑曹)는 법률, 형사처벌, 소송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바. 관비인 ‘다모’는 여성범죄나 양반가의 수색 등을 담당하였다.

해설 → 모두 옳은 설명이다.

9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894년 6월 일본각의에서 한국경찰의 창설을 결정하여 내정개혁의 방안으로서 조선에 경찰창설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홍집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경찰을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곧 경찰을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② 구한말(舊韓末) 일본이 한국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③ 미군정시대에는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1947년 9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경제경찰, 고등경찰 등의 사무가 강화되었다.
 - ④ 일제강점기 현병경찰은 첨보의 수집, 의병의 토벌 등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의 조정, 집달리 업무, 국경세관 업무, 일본어의 보급, 부업의 장려 등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한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해설 ➔ ①②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③ (X) 1947년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경제경찰, 고등경찰 등의 사무가 폐지되었다.

10 자랑스런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설명으로 그 인물과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차일혁 경무관 -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받은 호국경찰의 영웅이자 인본경찰 · 인권경찰 ·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 ② 양병하 치안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쿠과 달리 '분사되는 자는 너

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기타 학생은 연행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라고 지시하였다.

- ③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이다.
- ④ 안맥결 총경 – 1980. 5. 18. 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으며 자체 방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소량의 총기마저 격발할 수 없도록 방아쇠 뭉치를 모두 제거해 원천적으로 시민들과의 유혈충돌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광주와 달리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해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X) 이준규 총경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정리] 자랑스런 경찰의 표상

안맥결 총경	<p style="text-align: right;">(독립운동가 출신 여성경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서, 1919년 10월 평양 승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20일간 구금 ②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협의로 5개월간 구금되었으며, 1937년 일제가 조작한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수배된 후 만삭의 몸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가석방됨 ③ 1946년 5월 미군정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며 국립경찰에 투신하였고 1952년부터 2년 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풍속·소년·여성보호 업무를 담당, 여자경찰제도는 당시 권위적인 사회 속에서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였음 ④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 받아 후배 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 ⑤ 2018년 독립유공자 등록(전국포장 수훈)
차일혁 경무관	<p style="text-align: right;">(호국경찰 · 인권경찰 · 문화경찰의 표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북 18전투경찰대대장(경감)으로 경찰 투신,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 사살(1953)로 빨치산 토벌의 주역임 ② 빨치산 토벌 당시 이현상을 '적장의 예'로써 화장해주고, 생포한 공비들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으로 귀순을 유도한 인본경찰 · 인권경찰의 표상이 됨 ③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죽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사찰의 문짝만 태움으로써 화엄사(구례)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고, 충주경찰서장 재직 당시 '충주직업소년학원'을 설립하여 불우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경찰의 표본이 됨 ④ 화엄사 공적비 전립(1998), 보관문화훈장 수훈(2008),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 선정(2008, 문화재청),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주인공 장하림(박상원 역) 실제모델(1991, MBC) 등으로 업적을 인정받음 ⑤ 2019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됨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p style="text-align: right;">(호국경찰의 표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최규식 총경(경무관특진) 등 경찰관 10명이 차단 · 격투 끝에 청와대 사수함 ②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경찰관 최규식(태극무공훈장) · 정종수(화랑무공훈장)의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임

안병하 치안감	<p style="text-align: center;">(민주 · 인권경찰의 표상)</p> <p>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2년 경찰에 투신, 1979년 2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임명</p> <p>②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강경진압 방침이 내려오자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은 전남경찰들에게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함 →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 인권보호를 강조</p> <p>③ 신군부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하고 보안사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10여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사망함</p> <p>④ 2006년 순직경찰로 인정받아 서울 국립현충원에 영면</p> <p>⑤ 2009년 문을 연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경찰인재개발원)에는 안병하 치안감의 이름을 딴 안병하 훌이 생김</p> <p>⑥ 2017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됨</p>
이준규 총경	<p style="text-align: center;">(민주 · 인권경찰의 표상)</p> <p>① 이준규 서장은 1948. 3. 31. 경찰 입직(순경 공채)하였는데, 1980년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 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으며, 자체 방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소량의 총기마저 격발할 수 없도록 방아쇠 뭉치를 모두 제거해 경찰관들과 함께 고하도 섬으로 이동시키는 등 원천적으로 시민들과의 유혈충돌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광주와 달리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p> <p>② 이에 신군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어 1980년 직위해제된 후 파면되는 한편, 강경 진압 지시 거부 및 자위권 소홀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음</p> <p>③ 2018년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9년에는 형사판결 재심 무죄 선고 및 파면처분 직권 취소 등 명예 회복이 이루어짐</p>

11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조리와 규칙은 성문법원이다.
- 나.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를 법규명령이라고 한다.
- 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가 정한다.
- 라. 현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 마.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 바. 현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 사. 조리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나, 라, 바, 사 4개가 옳은 지문이다.

가 (X) 조리는 불문법원이다.

다 (X)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마 (X) 위임명령, 집행명령 모두 법규명령이다.

1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관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②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 ③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아 독자적인 행정입법 작용이 허용된다.
- ④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① (O)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관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 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해당 법령의 수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5676)하여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X) 행정입법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행정규칙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구분된다.

③ (X)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④ (X)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13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지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② 훈령과 직무명령 모두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다.
- ③ 훈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기에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 ④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훈령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실현 가능성성이 있을 것,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 등이 있다.

해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X)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다.

▶ 훈령의 요건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①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①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②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②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③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③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14 「수사경찰 인사운용규칙」이 적용되는 수사경찰의 근무부서로 옮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사이버범죄 수사부서
- ②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과학수사부서
- ③ 경찰청 교통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범 수사부서
- ④ 경찰청 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유치장과 호송출장소

해설 ① (O) 동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② (O) 동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③ (O) 동규칙 제3조 제1항 제6호
④ (X) 경찰청 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유치장과 호송출장소는 제외한다)(동규칙 제3조 1항 1호).

수사경찰 인사운용규칙 제3조

- ① 이 규칙이 적용되는 수사경찰의 근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찰청 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유치장과 호송출장소는 제외한다)
 - 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사이버범죄 수사부서
 - 3.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과학수사부서
 - 4.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여성청소년사범 및 지하철범죄 및 생활질서사범 수사부서
 - 5. 경찰청 외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외사사범 수사부서
 - 6. 경찰청 교통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범 수사부서
 - 7. 경찰교육기관의 수사직무 관련 학과
 - 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직제상 정원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기관
 - 9.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 규정에 따른 수사경찰 파견근무 부서
 - 10. 기타 경찰청장이 특별한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부서

15 경찰공무원 의무와 근거법령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 의무 • 지휘권남용금지 의무 • 제복착용 의무
②	국가공무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준수 의무 • 친절공정 의무 • 종교중립 의무
③	경찰공무원복무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의무 • 품위유지 의무(직무 내외 불문) • 민사분쟁에 부당개입금지 의무
④	공직자윤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등록과 공개 의무 • 선물신고 의무 • 취업금지 의무(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해설** ① (O)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 의무(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지위권남용금지 의무(동법 제19조), 제복착용권(동법 제20조 제1항)
- ② (O) 법령준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친절공정 의무(동법 제59조), 종교중립 의무(동법 제59조의2)
- ③ (X)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의무(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민사분쟁에 부당개입금지 의무(동규정 제10조), 품위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 ④ (O) 재산의 등록과 공개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3조 · 제10조), 선물신고 의무(동법 제10조), 취업금지 의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동법 제17조)

1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하명이란 일반통치권에 기인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하여 작위 · 부작위 · 급부 · 수인 등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하며 경찰관의 수신호나 교통신호등의 신호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한다.
- ② 부작위 하명의 유형으로는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금지는 절대적 금지이고, 유흥업소의 영업금지는 상대적 금지에 해당한다.
- ③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하명 · 허가 · 면제 등)와 형성적 행정행위(특허 · 인가 · 대리)로 구분할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④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는 당해 영업에 대한 거래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

- 해설** ④ (X) 하명에 위반한 행위 자체의 법률상 효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해 맥주를 판매한 경우 맥주 매매행위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17 경찰허가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고 한다.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부관의 경우 처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규에 의해서 부여되는 부관으로서 이는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부관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 ②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즉, 하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 및 경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부담과 정지조건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수정부담은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을 말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② (X) 부담이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하며, 주로 허가·특허 등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진다.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는 아니어서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별도로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독자적인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18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통지→비용의 징수→실행 순이다.
- ② 집행별은 경찰별과 병과해서 행할 수 없다.
- ③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체납처분의 중지→결손처분 순으로 진행한다.
- ④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선행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해설 ① (X)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통지→실행→비용의 징수 순이다.
② (X) 집행별은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로써 과하는 경찰별과 구별되며, 집행별은 경찰별과 병과해서 행할 수 있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19 경찰법령상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경찰행정에 관하여 중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 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 다.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라. 치안행정협의회의는 매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마.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O) 경찰법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 나. (X)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동법 제16조 제1항).
- 다. (X)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 제2항).
- 라. (X) 치안행정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치안행정협의회 규정 제5조 제1항).
- 마. (X) 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 모두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위원회 규정 제9조 제1항,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제7조 제1항).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③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해설 ①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② (O) 동법 제12조 제1항
- ③ (O) 동법 제13조 제1항
- ④ (X)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15조 제1항).

21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나.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

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후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사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가. (O)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2호

나. (O) 동법 제7조 제2항 제3호

다. (X)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동법 제7조 제2항 제4호)

라. (X)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7, 8, 9호 외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결격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동법 제7조 제2항 제4호).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동법 제7조 제2항 제4호)

바. (O) 동법 제7조 제2항 제10호

22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나. 근무성적 평정 시 제2평정(주관)요소들에 대한 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예측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라.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 마. 근무성적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며,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가. (O)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나. (O) 동규정 제7조 제3항

다. (X)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동규정 제7조 제5항).

라. (X)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동규정 제8조 제5항).

마. (O)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23 경찰예산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친으로써 확정된다.
- ③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 ④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국가재정법 제31조부터 제33조

- ② (X)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헌법 제54조).
- ③ (O) 동법 제42조, 제43조
- ④ (O) 동법 제58조 제1항, 제61조

24 경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려고 한다. 법률과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그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실적 주장이란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할 경우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 ④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언론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① (O)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② (O) 대법원 2011. 9. 2.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 ③ (O) 대법원 2011. 9. 2.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 ④ (X)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25 경찰활동의 인권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들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찰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경찰법」에 따라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③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정책과 관행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다.

- 해설** ① (X) 「국가재정법」은 경찰예산편성시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X) 「경찰법」에 따라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9조 제1항 제2호).
③ (O)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1조
④ (X)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26 프로파일링(PrOfil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유형(type)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identity)을 파악하는 것이다.
- ② 프로파일링은 범죄현장에는 범인의 성향이 반영된다는 것과 범인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 ③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은 범행 위치 및 피해자의 거주지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계량화하여 범인이 생활하는 근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④ 한국은 도시 간의 간격이 협소하고 거주지역 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 해설** ① (X)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유형(type)을 파악하는 것이다.
② (O)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성격적 특성과 범죄 현장에서의 행동 간에 직접적이고 일관적인 관련성이 있다 는 가정 혹은 전제에 그 근간을 두는 접근하는 과학수사기법이다.
③ (X) 범행 위치 및 피해자의 거주지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계량화하여 범인이 생활하는 근거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이다.
④ (X) 도시간 간격이 협소하고 거주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한국은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하기 다소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27 문제지향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제지향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이 단순한 법집행자의 역할에서 지역사회 범죄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역할로 전환할 것을 추구한다.
-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SARA모형이 강조되며 이는 조사(Scanning) – 평가(Assessment) – 대응(Response) – 분석(Analysis)으로 진행되는 문제해결 단계를 제시한다.
- ③ 문제지향경찰활동에서는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들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경우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 ④ 문제지향경찰활동은 종종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병행되어 실시되곤 한다.

해설 ② (X)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SARA모형이 강조되며 조사(Scanning) → 분석(Analysis) → 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으로 진행되는 문제해결 단계를 제시한다.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주요 개념	내용	학자
지역중심 경찰활동 (Community–Oriented Policing)	1)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이고 원리이다. 2)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3) 경찰과 지역사회가 마약·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그리고 전반적인 지역의 타락과 같은 당대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한다.	트로야노비치 & 베케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	1)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중점으로 우선순위를 재평가, 각각의 문제에 따른 형태별 대응을 강조한다. 2) 문제해결과정조사(Scanning) → 분석(Analysis) → 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 3) 일선경찰관에 대한 문제해결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분석 자료를 제공, 대중정보와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골드슈타인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Neighborhood–Oriented Policing)	1) 지역에서 범죄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와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2) 지역조직은 경찰관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서로를 위해 감시하고 공식적인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3) 지역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윌리엄스

28 범죄원인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아노미이론은 Cohen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 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나.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죄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죄피해자, 범행의 기술이다.

- 다. 사회학습이론 중 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한다.
- 라. Hirsc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을 애착, 전념, 기회, 참여라고 하였다.
- 마.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 바. 일상생활 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 이동의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을 들고 있다.
- 사. 범죄패턴 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 해설** 가. (X) 아노미이론은 Durkheim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 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Cohen은 하위문화이론을 주장하였다.
- 나. (X)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죄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회, 범행의 기술이다.
- 다. (X) 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은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는 이론이며,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는 이론은 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이다.
- 라. (X) Hirsc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을 애착, 전념, 신념, 참여라고 하였다.
- 마. (X)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 바. (O) 일상활동이론 중 VIVA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VIVA 모델은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로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 (Visibility), 접근성(Access) 4가지를 들고 있으며, 영문자 앞글자를 따서 ‘VIVA 모델’이라고 부른다.
- 사. (X)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보는 것은 집합효율성 이론이다.

2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특례 항목’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들로 묶인 것은? (판례에 의함)

- 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이는 특례법상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 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 운전은 특례법에서 규정한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 라.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특례법 소정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가. 나.
③ 나. 다.

- ② 가. 다.
④ 나. 라.

- 해설** 가. (X)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3107).
- 나. (O)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2016도18941).
- 다. (X)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도5540).
- 라. (O)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9도3716).

3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켜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조명 · 조경 · 가시권 확대, 방범창 등이 있다.
- ② 영역성 강화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울타리 · 펜스의 설치, 청결유지 등이 있다.
- ③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한다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차단기, 통행로의 설계 등이 있다.
- ④ 유지관리는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 수리, 잠금장치, 조명 · 조경의 관리 등이 있다.

- 해설** ① (X) 방범창은 자연적 접근통제에 해당한다.
② (X) 청결유지는 유지관리에 해당한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잠금장치는 자연적 접근통제에 해당한다.

[핵심정리]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원리	개념	예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원리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및 조명 · 조경 설치 등
자연적 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 · 잠금장치 · 방범창 등의 설치
영역성의 강화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 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울타리 · 표지판의 설치, 사적 · 반(半)사적 · 공적 공간의 구분
활동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놀이터 · 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 ·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유지관리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 · 조경의 관리

31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 ㉡ + ㉢ + ㉣)

- 가. (㉠)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제외)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나.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라.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① 94

② 96

③ 98

④ 99

- 해설** 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운전면허결격사유) (18세)

- 나.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73조 제5항)

- 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81조)
- 라. 제1항에 따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동법 제84조의 2).

합계 : $18 + 75 + 1 + 2 = 96$

32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 ❶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때, 그 시험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한 경우
- ❷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해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 ❸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
- 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경우

해설

- ① (O)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2. 13. 2017도 12949).
- ② (X)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6. 11. 9. 2004도 8404).
- ③ (X)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7. 15. 2010도 2935).
- ④ (X)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2005도 7125).

33 경호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❶ 경호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호위란 피경호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이다.
- ❷ 자기 담당구역이 아닌 인근지역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원조의 원칙에 따라 확인·원조해야 한다.
- ❸ 행사장 경호과정에서 비표확인이나 MD(금속탐지기) 설치 운영 등은 제3선 경계구역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 모두 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해설 ① (X) 피경호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는 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경호	정부요인, 국내외 중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간접의 위해를 사전에 제거하여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며,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호위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 경비는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이다.

- ② (X) 자기책임구역을 이탈하는 것은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

[핵심정리] 경호의 4대원칙

자기희생의 원칙	피경호자는 어떠한 상황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경호원은 피경호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육탄방어의 정신으로 피경호자를 보호해야 함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경호원은 각자 자기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비록 인근지역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책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됨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유일한 통로여야 한다는 것으로 하나의 통제된 출입문이나 통로를 통한 접근도 반드시 경호원에 의하여 확인된 후 허가절차를 밟아 이루어져야 함
목표물 보존의 원칙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를 떼어 놓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① 행차 코스, 행사할 예정인 장소 등은 비공개되어야 함 ② 동일한 장소에 수차 행차하였던 곳은 가급적 변경하여야 함 ③ 대중에게 노출된 도보행차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함

- ③ (X) 비표확인이나 MD(금속탐지기) 설치 운영 등은 제1선 안전구역에서의 활동이다.

- ④ (O)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34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상 관련자들에게 부여된 준수사항들로 옮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경비원은 장비를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고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해설** ① (O)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② (O) 동법 제16조의2 제1항 (경비원의 장비등)
 ③ (O)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④ (X)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35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첨보와 정보는 구분되며 첨보가 부정확한 견문이나 지식을 포함하는데 반해 정보는 가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된 지식이다.
 ② 정보는 사용목적(대상)에 따라 소극정보와 적극정보로 구분되며 국가안전을 유지하는 경찰기능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소극정보라 한다.
 ③ 2019년 제정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서는 정보활동의 범위를 범죄정보를 포함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로 재편하였다.
 ④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라 정보관이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모든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해설** ① (O) 첨보와 정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② (O)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적극정보와 소극정보(사용목적(대상)에 따른 구분)

적극정보	① 국가이익의 증대를 위한 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 및 정책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말함 ②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기타 각 분야의 국가정책들이 적극정보가 추구하는 정보요소들이며 그 정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정책정보(policy intelligence)라고 부르기도 함 ③ 주요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정책과 관련된 민심의 동향이나 여론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소극정보 (보안정보)	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국가경찰기능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말함 ② 적극정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극정보(negative intelligence), 방첩정보 또는 대(對)정보(counter intelligence) 등의 용어들과 호환될 수 있음 ③ 보안정보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모든 대내외 세력에 대한 정보활동과 국가의 보안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 있음

- ③ (O) 동규칙 제4조(정보활동의 범위) – 범죄 정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중요시설 ·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집회 · 시위 사회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 · 집행 · 평가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보
 ④ (X) 정보관이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신분을 밝히고 정보수집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신분 밝힘과 목적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정보경찰 활동규칙 제6조 제1항 · 제2항).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 사유가 법률 조항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금지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해산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반드시 ‘자진 해산을 명령한다’는 용어가 사용되거나 말로 해산명령임을 표시해야 한다.
- ④ 해산명령의 대상은 ‘집회 또는 시위’ 자체이므로 해산명령의 방법은 그 대상인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들 전체 무리나 집단에 고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대법원 2012. 2. 9. 2011도7193

② (O) 대법원 2011.10.13. 2009도13846

③ (X)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회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에 집회 및 시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자진해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때 해산을 요청하는 연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0. 11. 24. 2000도2172).

④ (O) 대법원 2019.12.13. 2017도19737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②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 교육 · 취업 · 주거 ·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해설 ① (O) 동법 제2조 제1호

② (X)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동법 제4조 제1항).

③ (O) 동법 제4조의 2(국가의 책무)

④ (O) 동법 제22조의2 제1항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38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안관찰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였다 고 할 수 없다.
-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O) 옳은 설명이다.

② (O) 동법 제14조(결정)

③ (X)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횟수 제한 없이 연장 할 수 있다(동법 제5조).

④ (O) 동법 제23(행정소송)

39 외사경찰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사요원 관리규칙」상 외사요원이라 함은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그리고 국제협력업무를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 ② 「출입국관리법」상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수사절차 등과 관련해 일정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리고 그 가족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 ④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은 외국인 관련범죄의 수사를 함께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외사요원 관리규칙 제2조

② (O)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3조(긴급출국금지)

③ (X)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리고 그 가족 및 초청계약자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자	미군의 구성원	미국의 육·해·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
	군속(軍屬)	미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에 고용되거나 동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

대상자	가족	미군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가족 중 ①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②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군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초청계약자	미군 등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미국정부가 지정한 자 → 미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의 고용원 및 그 가족
제외자	① 주한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② 주한미군사고문단원 ③ 사적으로 국내여행중인 미군 ④ 경제적으로 독립한 주한미군의 21세의 아들 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④ (O) 범죄수사규칙 제232조 · 233조

4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과정 모두에서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우선주의를 전명하고 있다.
- 나.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조해야 한다.
- 다.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의 공조절차에서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법무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 라.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마.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O) 국제형사법 공조법 제3조, 제4조 및 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 제4조

상호주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4조(상호주의) · 범죄인 인도법 제4조(상호주의)
조약간의 관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조(해당 조약우선) · 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해당조약 우선)

- 나. (X)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7조).
- 다. (X)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1조, 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자료의 송부).
- 라. (X)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범죄인인도법 제6조).
- 마. (X)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거절사유이다(범죄인인도법 제9조).